

대전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8나1180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변론 종결 2020. 1. 22.

판결 선고 2020. 2. 12.

제 1 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가소9150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4,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2019. 9. 2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 서 약정금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62,654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됨으로써 항소취지는 실효된 셈이나 항소장의 기재대로 적는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2. 9. 25. D의 연대보증하에 E에게 각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8., 이자율 월 3%, 지연손해금률 월 4%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2. 9. 26. E 소유인 충북 옥천군 F 토지 및 D 소유인 대전 대덕구 G건물 H호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설정받았다.

나. 위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위 F 토지에 관하여는 2013. 6.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3. 12. 9.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자 2013.12. 24. 위 법원의 2012. 12. 10.자 취소기각결정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위 G건물 H호에 관하여는 2013. 6. 3. 대전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4. 6. 24.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자 2014. 7. 17. 위 법원의 2014. 6. 27.자취소기각결정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한편, E는 2013. 12. 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외에도 E는 피고에게 2013. 10. 28. 200만 원, 2014. 6. 23. 4,93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4. 1. 15. 원고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E와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8951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5. 4. 9. 'E가 C의 사내이사이던 피고에게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대부업자인 피고를 통하여 E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와 C가 각 3,000만 원씩 E에게 대여하면 피고가 원리금 회수를 담당하여 회수한 금액의 절반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E로부터 2013. 9. 7. 300만 원, 2013. 10. 28. 450만 원, 2013. 12. 6. 3,000만 원 및 2,000만 원 상당의 차량 1대, 2014. 6. 23. 4,930만 원 및 합계 1,160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받아 총 1억 1,840만 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그중 절반인 5,92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돈은 2,60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3,320만 원을 청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3. 12. 6. 원고와 C가 E에게 대여한 돈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아 그중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해 준 사실이 한 번 있을 뿐 피고가 원고의 대여금 회수를 담당하고 회수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피고는 2014. 1. 15.경 원고의 E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채권을 600만 원에 양도받았으므로, 이후 E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원고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약정의 인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E로부터 원고와 C의 대여원리금을 회수하여 그중 원고의 몫인 절반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원고와 C는 각각 E에게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금액을 대여하였고, 공동근저당권자로 등재되었다.
- ② 원고는 E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위 대여금과 관련한 거래는 모두 피고를 통해서만 하였으며, E가 원리금을 일부씩 변제할 때에도 모두 피고나 피고가 지시하는 계좌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③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증거가 없으며,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G건물 H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가 불과 600만 원에 위 채권을 양도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이자제한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3,000만 원을 이율 연 36%, 연체이율 연 48%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변제기인 2012. 12. 8.까지의 이자가 2,219,178원(= 3,000만 원 × 36% × 75일/365일)이 되고, 2013. 12. 6. 지급받은 2,000만 원으로는 위 2,219,178원과 그 지급일까지의 연체이자 14,321,095원(= 3,000만 원 × 48% × 363일/365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3,459,727원(= 20,000,000원 - 2,219,178원 - 14,321,095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위 600만 원을 지급한 2014. 1. 15.에는 원금 26,540,273원(=30,000,000원 - 3,459,727원), 연체이자 1,396,091원(= 26,540,273원 × 48% × 40일/365일) 합계 27,936,364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대여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상의 연 30%를 기초로 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도 원리금이 21,483,835원 남아있는 상태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채권양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채권 회수금액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로부터 차량 3대를 대물변제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E로부터 2013. 10. 28. 200만 원, 2013. 12. 6. 3,000만 원, 2014.6. 23. 4,930만 원 합계 8,130만 원을 변제받았고, 그중 원고에게 2013. 12. 6. 2,000만원, 2014. 1. 15.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E가 원고에게 2013. 9. 27. 300만 원 및 2013. 10. 28. 2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고의 비용으로 E 소유인 위 F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법무사 사무소에 2013. 4. 4. 460만 원 및 2013. 5. 28. 42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돈을 받은 뒤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임의경매가 취소된 점에 비추어, 위 돈은 대여금의 변제라기보다는 경매 취하를 위한 경비의 변제 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지급의무

그렇다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채권 회수금 8,130만 원 중 절반인 4,065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2,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65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마지막으로 채권을 회수한 다음 날인 2014.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염원섭, 판사 곽희경, 판사 장민하